

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이 필 레 의원)

의안 번호	20-143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. 10. .

발 의 자 : 이필레, 권영숙, 김성희
김영미, 김진천, 이홍민
정혜경

1. 개정이유

상위법 「지역보건법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과태료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라 처리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 정비

- 제명 “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조례”을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”로 함.

나. 「지역보건법」 개정사항 반영 (안 제1조, 안 제3조)

- “제26조제2항”→ “제34조제2항”
- “제26조제1항”→ “제34조제1항”

다. 과태료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 삭제

(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7조 삭제)

라. 과태료 부과기준을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에 맞게 변경 (안 별표)

3. 관계법령
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
-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, 제29조, 제34조

4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붙임

5. 입법예고: 2020. 10. 15.~2020. 10. 20. (의견없음)

6. 조례안: 붙임

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과태료 부과·징수)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제3조(과태료 부과기준) 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과태료 부과기준(제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.

2. 개별기준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부과금액(단위 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.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	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제1항제1호	100	200	300
2.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	「지역보건법」 제34조 제1항제2호	100	200	300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□ 지역보건법

제23조(건강검진 등의 신고) ① 「의료법」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(이하 "건강검진 등"이라 한다)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의료기관이 「의료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. 15.>

제29조(동일 명칭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34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

2.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서울특별시마포구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·징수조례

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
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보건소 의약과 유 진
연 락 처	02-3153-9123